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가단100133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전 문

원고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피고A

변론 종결 2015. 5. 19.

판결 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B 대 1,91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4.2㎡ 위에 설치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과 기계식 주차장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2, 3-1, 3-2, 5, 6-1, 6-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대 1,9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신탁법상 수탁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남쪽으로 인접한 C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에 적힌 (가)부분 토지를 건물이나 기계식 주차장 구조물의 일부 부지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 위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그 토지 부분(상세한 현황은 뒷장의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참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개발행위로 현재도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계속발생하고 있고, 피고의 건축물을 파손하여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원인으로 파손범위를 파손상태를 유지하고 현재 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현 시점에서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앞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박관근

별지